

의안번호	2207837
의 퇴 인	박덕흠 의원
회 답 일	2025.04.01.
추 계 번호	25C0355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7조 (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)	(제3항) 특수학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에게 제2항에 따른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7조 (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해당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
 - 현행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7조제2항은 교육감이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－ 동법 시행령은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를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로 구분하고 있으며¹⁾ '24년 8월 기준 총 738명이 재학 중임

1)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」 [별표] 11.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가. 중도중복(重度重複)장애: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.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, 제9조제4항에

* [참고자료] 중도중복장애 및 시청각장애학생 현황

- 개정안은 특수학교 또는 각급학교의 장(이하 “특수학교장 등”)이 교육감에게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특수학교장 등의 요청에 따라 학급이 추가 설치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예측하기 어려워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 - 개정안에 의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장 등의 요청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이 하향 조정되고, 조정된 기준에 따라 편성된 학급의 수가 기준 조정 이전보다 많아야 함
 - 그러나 특수학교장 등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구체적인 학급 설치 기준을 예측하기 어려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 - － 참고로, 현행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7조제2항은 2022년 6월 29일 시행되었으며,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학급 설치 기준이 하향 조정된 사례는 확인된 바 없음
- 이에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따라 제출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및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

1)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

2) 시각장애, 청각장애, 지체장애 또는 정서·행동장애

나. 시청각장애: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현수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현수	02-6788-4627	jhs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중도중복장애 및 시청각장애학생 현황

(단위: 명)

학교구분		장애영아	유치원	초등학교	중학교	고등학교	전공과 ¹⁾	합계
특수학교	중도중복장애	1	18	219	114	145	36	533
	시청각장애	1	—	—	—	1	—	2
	소계	2	18	219	114	146	36	535
특수학급 ²⁾	중도중복장애	—	10	98	38	42	—	188
	시청각장애	—	—	—	1	—	—	1
	소계	—	10	98	39	42	—	189
일반학급	중도중복장애	—	2	4	2	6	—	14
	시청각장애	—	—	—	—	—	—	—
	소계	—	2	4	2	6	—	14
합 계		2	30	321	155	194	36	738

주: 1)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을 목적으로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4조에 따라 특수교육기관에 설치된 별도 과정

2)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

자료: 교육부, '24.4.1. 기준